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0.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재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및 인성함양 등을 통한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 전문적 인재, 통섭적 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비교과 교육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 학칙 제26조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강의(학습), 실험·실습, 학습동아리 활동, 특강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종류) ①비교과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1.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관련 프로그램
2. 교양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어학능력 및 인성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3.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4. 학생복지처(학생생활코칭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더쉽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5. 한국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
6. 공자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프로그램
7. 우송IT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관련 IT교육 프로그램
8. 우송비즈니스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ERP프로그램
9. 우송보건복지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자격증특강 프로그램
10. 기타 졸업유예자 또는 취·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

②본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자격) 비교과 교육과정의 수강 자격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 대학 수료자도 수강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범위 및 방법) ①본 대학에 설치된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또는 프로그램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비교과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이수구분 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부득이 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③과정별 이수 결과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을 부여 할 경우 그 표기는 Pass/Fail로 한다.

④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기적(학기단위) 또는 비정기적(단기 특강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교비지원: 대학은 매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비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2. 국고지원: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한다.

3. 기타: 부득이 초과 예산이 발생 할 경우 대학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한다.

제7조 (이수신청)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별로 별도 공지한 이수신청 기간 내에 일정 양식에 의거하여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의무) ①본 규정 제3조에서 명시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센터 혹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프로그램운영 개시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정별 주관 부서(센터)에서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일부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칙에서 정한 졸업자격 및 학생 개인별 경력관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계의 범위 및 제한 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우송대학교 학칙’과 본 규정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학사운영을 도모한다.

제10조 (기타)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의 세부 운영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